

# KERI Brief

##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jm@keri.org)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세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화와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등을 통해 해외유보된 자본을 국내로 유입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특히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대책으로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화로 기업의 국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유지 또는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의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및 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2016년

기준 약 91개 국가, 특히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들이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다가 국제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고, 제도 전환 전보다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이 56.4%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후 해외내부유보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조세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세금 부과가 가능한 원천지주의 과세가 타당할 것이다.

## 1. 검토배경

□ 2017년 4월 26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혁안 중 법인세율 인하와 원천지주의[영토주의(Territorial Tax System)]\*과세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 조세정책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발생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임

- 트럼프 정부는 '높은 법인세율'로 기업과 일자리 해외 유출이 발생하고, '거주지주의[글로벌주의(Worldwide Tax System)]\* 과세'로 인해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었다고 판단, 개혁안을 발표함

\* 국내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발생 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 반면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세입개혁 재원조달 방안이 법인세 인상 등 법인과세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의 법인세제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본사 이전 등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인조세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2008년 이후 과반수의 OECD 회원국(17개 국가)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소득 유보 등 거주지주의의 한계에 따라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28개 국가가 법인과세방식상 원천지주의를 수용하고 있음

- 원천지주의 과세는 자본이 국내로 환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미국 정부는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 시 해외에 잠겨있는 미국 자본 2조 6천억 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sup>1)</sup>

- 또한 다국적기업에 있어 원천지주의 과세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2012년 기준으로 포브스 500기업 중 59%가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한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미국에 본점을 둔 기업을 제외한다면 91%가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임.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될 수 있는 과세제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외국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잠겨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하여 경기회복, 세수(稅收)에 도움이 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제개혁안 등 국제적 동향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특히 국외원천소득 과세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함

<sup>1)</sup> Nick Wells, "Companies are holding a \$2.6 trillion pile of cash overseas that's still growing", CNBC, 2017.4.28. (<http://www.cnbc.com/2017/04/28/companies-are-holding-trillions-in-cash-overseas.html>)

## 2.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26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안이자 개혁안인 세제개혁을 발표하였음.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완화 등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음**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며, 개인 소득세율을 내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임

- 이외에도 상속세·최저한도세 폐지, 표준공제액 증액, 소득공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나, 여기에서는 연구목적상 법인과세 관련 내용만 다루기로 함

□ **현행 미국의 법인과세제도가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과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자 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제기되어 왔고,<sup>2)</sup> 트럼프 대통령도 법인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미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 외에도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등 전 세계의 소득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수익이 해외에 체류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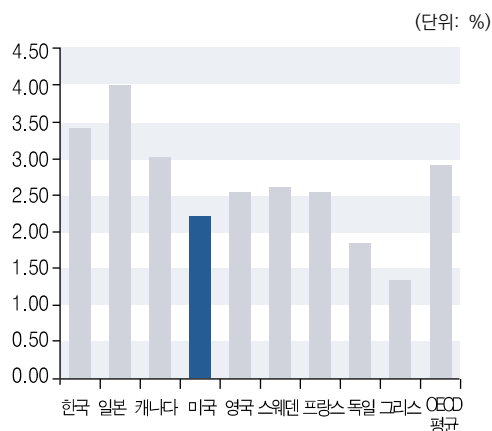
2) 민주당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 교서에서 법인세율 28%로 인하 및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미국(35%)보다 낮은 19%를 적용하는 것 외에 일회성 조치로 체류한 이익을 미국에 환류하는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음(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2016.2.19.), 「17年度予算教書-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http://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52291?site=nli>).

3) 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2016.2.19.), 「17年度予算教書-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높은 법인세율)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지방세 포함 38.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법인세 수입은 GDP 대비 2.2%로 OECD 회원국 평균(2.9%)보다 낮음

○ 미국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피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지사로 이전하는 등의 조세 전략을 원인으로 보고 있음<sup>4)</sup>

〈그림 1〉 주요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자료:OECD Revenue statistics(2015), 2013년 징수 기준

- (거주지주의 과세)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고 있음<sup>5)</sup>

○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로 자본과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일자리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미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4) 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2017.2.20.), 「法人税制改革論議が本格化-注目される国境調整税(BAT)の行方」, ニッセイ基礎研究所.

5) 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2016.2.19.), 「17年度予算教書-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법인과세 관련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6)</sup>**

- 첫 번째,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함. 다단계 누진세율(15~35%)<sup>7)</sup>을 15% 단일세율로 인하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 함
  -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대기업에 모두 적용됨. 소규모 사업자와 헤지펀드, 글로벌로펌,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sup>8)</sup>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함
- 두 번째, 해외유보수익에 대해 미국 내로 송금할 때 내는 일회성 과세(송금세)를 다시 시행할 예정임.<sup>9)</sup> 이번 발표에서 세율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는 10%로 되어 있음
  - 현재 미국은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 수익에도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이를 본국에 송금하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도록 하였음

6)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이번 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음. 므누신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국경조정세를 현재대로 놔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곧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국경조정세'는 근본적으로 수입과 수출에 어떻게 과세하느냐를 바꾸는 것인데, 현재 공화당은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음. 이 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의 수입이 발생해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임

7)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1.

8) 지난 수십 년간 도관사업의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도관사업이 차지하고 있음

9) 미국은 2004~2005년 중에 한시적으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35%의 법인세율이 아닌 5.25%의 경감세율을 적용, 당시 해외유보소득 중 절반인 3천억 달러 이상이 미국에 유입되었음

- 이 정책에 따라 미국 다국적기업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약 2조 6천억 달러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정부는 이 자본을 미국으로 환류시켜 경제성장과 세수 증대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세 번째,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거주지주의(글로벌주의) 과세에서 원천지주의(영토주의) 과세로 전환하려 함

- 소득의 원천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해외에서 번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됨

□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 자원 조달<sup>10)</sup>에 대하여 기업의 해외이익에 대한 송금세 부과로 해외의 미국 자본을 미국 내로 유입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 이상 회복시켜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를 이용한다고 설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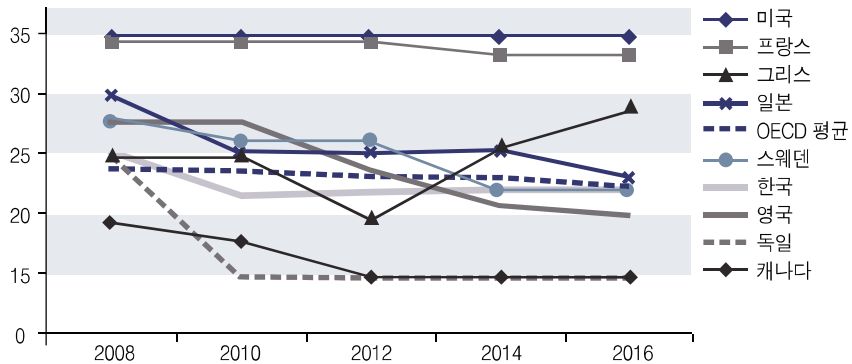
- 미국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현재까지 유지해왔으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자 파격적인 감세를 개혁안의 내용으로 포함하였음

- 2008년 이후 OECD 34개 회원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국(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으로 과도한 국가채무비율<sup>11)</sup>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소한 예외적인 국가임

10) 미국 연방예산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향후 10년간 2조 2천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

11) 국가채무비율(2015년 기준): 칠레·멕시코(미제출), 그리스(190%), 헝가리(99.6%)

〈그림 2〉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동 추이 비교



자료: OECD tax database.

○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sup>12)</sup> 미국도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지주의의 한계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미국은 원천지주의로의 근본적인 과세제도의 변화와 그간 유보된 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추진하려 함

○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치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sup>13)</sup>

○ 해외유보소득이 많은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의 경우 현재 2300억 달러(약 260조 380억 원)를 국외에 유보하고 있음. 애플은 역외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 미국으로 현금을 송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sup>14)</sup>

12) 영국: 2020년까지 17%로 추가 인하 예정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기업들의 해외이탈을 막기 위해 15% 이하로 인하 표명(2016.7.3, 오즈번 재무장관 FT 인터뷰)  
 - 프랑스: 현행 33.33% → 2020년까지 28%로 인하 추진 (2015, G20성장전략)  
 - 일본: 현행 23.4% → 2018년까지 23.2%로 인하 추진 (2016 한일재무장관회의)  
 - 독일: 2008년 25% → 15%로 이미 인하

13) Curtis Dubay, "A Territorial Tax System Would Create Jobs and Raise Wages for U.S. Workers", The Heritage Foundation, 2013.9.12.

14) Yoree Koh, "Trump Tax Plan Doesn't Solve Tech's Multibillion-Dollar Overseas-Cash Problem", The Wall Street Journal, 2017.4.27.

### 3.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 국제적인 확산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가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에 비교하여 세금부담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sup>15)</sup>에서 나라마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tax credit method)’이 그것임

- ‘국외소득면제방법’은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의 국제적 이중과세 완화 방법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은 자국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함.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임

□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이나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를 채택할 동기를 가지게 됨. 실제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원천지주의를 법인과세상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유럽연합(EU) 대부분의 국가들과 일본도 이미 원천지주의 과세를 도입하였음<sup>16)</sup>

- 2016년 기준 약 91개 국가들이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부록 그림 1〉 참조),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음
- 특히 많은 OECD 국가들은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 유사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를 포기하고

15) 국외원천소득을 획득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에서 과세되므로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단의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장치가 없을 경우 국제거래는 위축될 수 있음  
 16) 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0, p.430

원천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sup>17)</sup>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非)이동성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를 하는 제도를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라고 함<sup>18)</sup>

- 추가적으로 징수할 세금을 포기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주요 OECD 국가 중 미국이 완전한 형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따르고 있음. 다만,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국외소득면제방법, 즉 원천지주의 과세를 포함하고 있어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법인과세상 거주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더 줄어들 것임

〈표 1〉 OECD 회원국의 국외원천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원천지주의	거주지주의
* EU국가: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등	* 한국,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미국은 원천지주의로 과세방식 전환 추진

자료: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표 재구성

17) 국외원천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국제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요건	이중과세 조정 방법
한국	지분율 25% 이상	〈세액공제〉 자회사 100%
미국	지분율 10% 이상, 의결권 5% 이상	〈세액공제〉 자손증손회사까지 100%
일본	지분율 25% 이상	〈소득면제〉 자회사 95%
영국	지분율 10% 이상	〈소득면제〉 자손회사 100%
독일	지분율 제한 없음	〈소득면제〉 자손회사 95%
프랑스	지분율 10% 이상	〈소득면제〉 자손회사 95%

18)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인 ‘이동성소득(mobile income, 이자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이동성소득(immobile income)’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임(오윤·임동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집」 제31집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p.189.)

□ OECD 회원국 중 2000년 이래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수는 13개 국가에서 그 두 배가 넘는 28개 국가로 증가하였음.<sup>19)</sup>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sup>20)</sup>

-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거주지주의 과세)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한 유의미한 국가임<sup>21)</sup>

○ 정책 변화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제경쟁력의 상실이었음. 뉴질랜드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한 21년간(1989~2009년)의 첫 5년과 마지막 5년을 비교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은 뉴질랜드는 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에 호주의 증가율은 155%, OECD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은 19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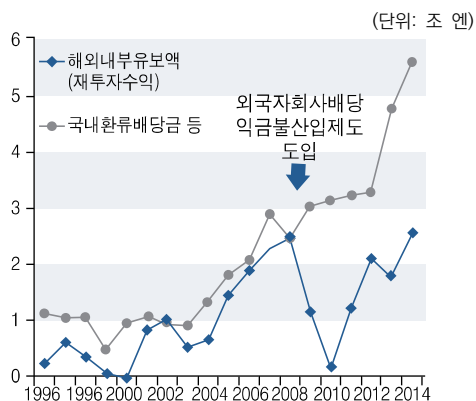
○ 제도 전환 후 5년간(2010~2014년) 뉴질랜드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전 5년(2005~2009년)간 평균 비율보다 56.4% 증가하였음.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의 증가에 제도 전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sup>22)</sup>을 일본으로 환류시키는 선

순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2009년 제도 도입 이후에 해외내부유보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수익의 국내환류비율이 2009년 72.3%로 전년 대비 23.1%p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95.4%까지 증가하였음. 해외내부유보액의 감소에 제도 도입이 큰 역할을 했고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sup>23)</sup>

〈그림 3〉 일본 해외직접투자 관련 배당금액의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일본은행, "국제세지통계"

- PWC의 보고서<sup>24)</sup>에 따르면 원천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포브스 500 기업 중 원천지주의 과세를 채택한 국가에 본점을 둔 OECD 기업의 비율은 2000년 17%에서 2012년 61%로 증가하였음

○ OECD 기업(포브스 500) 중 원천지주의 과세 적용 국가에 본점을 둔 기업의 매출은 2000년 16%에서 2012년 59%로 증가하였음(부록 2 참조)

19) 가장 최근에는 영국,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등이 도입하였음(2009년)

20)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21)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1988년 33%에서 2009년 30%로 인하되었고, 현재 28%임. 항상 OECD 평균(2009년 23.9%, 현재 22.5%)보다 높아서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을 채택할 동기가 있었음

22) 2008년 5월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은 해마다 2~3조 엔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약 17조 엔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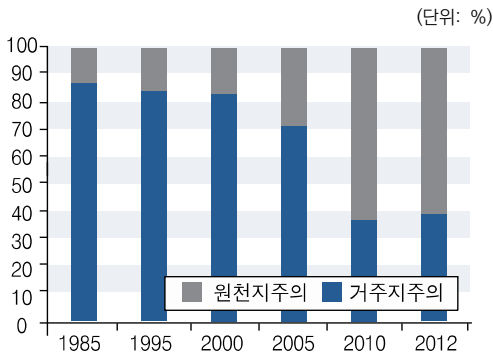
23) 일본 국내에 환류한 자금도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고용관계지출에 30% 정도 쓰여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24)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 2012년 기준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본점을 둔 OECD 기업(포브스 500) 중 91%가 원천지주의 과세 적용 국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매출의 93%가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서 발생하였음(부록 3 참조)

〈그림 4〉 포브스 500기업 중 OECD 기업의 본사 수 변동 추이



자료: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그림 재구성

- 또한 전체 OECD 회원국 중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은 2000년 33.7%에서 2012년 69.9%로 증가하였음

#### 4.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검토

##### (1) 문재인 정부의 세입개혁 방향과 평가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법인과세 관련 내용이 없으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세입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그 중 법인과세 관련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임

- 우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시행한 후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함

□ 위의 법인과세 관련 세입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되지 않아 국내 기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28개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고,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sup>25)</sup>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역주행할 수는 없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하면 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 유입은 4.1%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sup>26)</sup>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 인상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sup>27)</sup>

25) 주변국 법인세율: 대만 17%, 싱가포르 17%, 홍콩 16.5%, 태국 20%, 중국 25%

26) 조경엽,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집, 2016.11.1.

27) 2016년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하고, 고용도 0.3~0.5% 감소한다고 함(김학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 2016.8.)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2013년과 2014년 연속적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현재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2009년 법인세율 인하 전보다 2%p 높은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음

-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은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임. 현재 명목세율과 최저한세율 간 차이가 작고,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77%로 다른 국가에 비해(50% 대) 높은 수준임<sup>28)</sup>
-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업에 부여한 공제·감면을 제한하여 조세정책상 세제지원 효과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면 연구개발(R&D)이나 시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한 만큼 최저한세율 인상은 신중하여야 함

〈표 2〉 법인세 최저한세율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이전	2009년	2010~2012년	2013년	2014년 ~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13	11	11	12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15	14	16	17	

-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sup>29)</sup>)

28) 최저한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는 다음과 같음 (단위: %)

구분	우리나라	미국	대만	멕시코
최저한세율(A)	17	20	10	16.5
법인세 최고세율(B)	22	35	17	28
A / B	77.3	57.1	58.8	58.9

\* 영국·독일은 최저한세 제도가 없으며, 일본은 감면제도별로 한도를 설정

2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국 기업 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직전 사업년도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위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함.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짐

실효세율이 2011년보다 1.7%p 인상되었고 비과세·감면 중 필수적인 R&D·투자 관련이 96% 이상을 차지하므로 더 이상의 폐지·축소는 신중하여야 함

-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투자세액공제를 인하, R&D 세제지원 축소가 대기업 위주로 정비되어<sup>30)</sup> 2013년 이후 대기업 감면액은 대폭 감소되었음
- 대기업 비과세·감면 중 경제성장 등에 필수적인 R&D·투자 관련 부분이 96%를 차지하고,<sup>31)</sup> 전체 R&D에서 대기업이 7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sup>32)</sup> 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는 국가 전체 R&D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표 3〉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단위: %)

구분 (신고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18.5	19.1	18.6	19.0	19.5
상호출자제한기업	17.5	18.3	18.0	18.7	19.2
중견기업**	-	-	-	17.4	18.1
중소기업	13.4	13.5	12.5	12.6	12.7

\*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

\*\* 중견기업은 2014년도부터 통계 산출

자료: 국세통계연보

30) 대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2013~201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율 1%p 인하 (2014)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설비,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2016)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대기업 R&D 공제율 축소	(2014) 3~6% → 3~4% (2015) 3~4% → 2~3%

31)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 2조 6천억 원 중 R&D 1조 5천억 원, 투자 1조 원 등이 96%를 차지함

32) 2014년 R&D 투자 중 대기업이 38.6조 원(77.5%), 중소기업이 11.2조 원(22.5%)임

**(2) 우리나라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와 문제점**

□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에 입각한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sup>33)</sup>
- [간접납부세액공제] 또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으로 봄<sup>34)</sup>
- [특정외국법인세제(이하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세제'라 함)]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세제임. 즉, 조세회피처의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임<sup>35)</sup>

□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및 그 이중과세조정 방식으로 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첫 번째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이 자본수출중립성<sup>36)</sup>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임
  -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채택하여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의 자국 유치와 자국기업의 해외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거주지주의에서 이탈하였음.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sup>37)</sup>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포함됨
  - 특히 거주지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원천소득을 거주지국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므로써 자본수출국의 해외진출 장려에 대한 이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두 번째는 거주지주의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평균 이상의 세율국가의 기업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함

3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34)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내국법인이 자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간접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해외 진출의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36)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은 자국의 자본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그 과실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임. 즉 투자나 경제활동을 국내에서 행하는 것과 국외에서 행하는 것 사이에 세제상 중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임; 구자은·오윤·임동원, "통상규범과 국내세법의 조율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학회, 2013, p.256

37) Committee on Ways and Means Press Release, "Camp Releases Tax Reform 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Make the Tax Code Simpler, Fairer and Flatter", 2014.2.26.

〈표 4〉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

본사 소재지	지점 소재지	세전 이익	세금 계산	세후 이익
한국 (법인세율 22%)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1,000 억 원	125억 원(아일랜드 납부액) + 95억 원(한국 납부액) = 220억 원	780 억 원
영국 (법인세율 20%)			125억 원(아일랜드 납부액) + 0(영국 납부액)* = 125억 원	875 억 원

\* 영국은 국외소득에 대해 소득면제(원천지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본사의 추가납부세액은 없음

- 위와 같은 문제들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 유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현지 유보는 ①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며, ②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옴

○ 해외시장에서 획득한 이익의 과도한 해외유보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R&D나 고용 등을 가져올 국내 투자를 줄어든게 함

□ 이상과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해외유보소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표명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제도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국제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환류하든 현지에서 유보되든 간에 관계없이 원천지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투자배분의 왜곡도 해결되어 과도한 해외유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해외유보소득 중 해외 조세회피처 등의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소득을 그 자회사에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CFC세제임. 그러나 국제 거래의 증가 및 각종 금융제도의 발달로 해외유보소득의 과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특히 각국의 세수확보가 치열한 상황에서 CFC세제와 같은 규제보다는 저세율 국가에 유보되고 있는 해외소득이 없도록 하는 세제상의 유인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5.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법인세율 유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OECD 보고서도 법인세 인상이 저축과 투자결정을 왜곡하여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sup>38)</sup>

-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법인세 유지 또는 인하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여 기업 및 가계의 소득 증가가 세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임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해외유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여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sup>39)</sup>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여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의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함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봉쇄효과 해소)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하에서 기업은 국외원천소득을 국내환류시키지 않는 정책을 구사하여 봉쇄효과(lockout effect)가 발생되는데 원천지주의 과세를 적용하면 이러한 봉쇄효과를 해소할 수 있음

- 봉쇄효과 해소를 통해 해외투자에 의한 소득을 국내로 조기에 환류하도록 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기업은 배당정책 수립상 조세부담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국내환류에 대한 세부담이 없다면 그만큼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임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 다국적기업의 본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하는데, 본사 소재지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 국가라면 다국적기업 본사로서는 매우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 소재 자회사를 가진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할 경우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의 본사 유치에 원천지주의 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은 PWC의 보고서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에서 여실히 입증하고 있음

○(세수입의 유지 또는 증가) 해외투자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거주지국의 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sup>40)</sup> 현재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률이 낮은 편이므로 세수입의 감소가 거의 없을 것임

-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

<sup>38)</sup>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2011.6., p.51

<sup>39)</sup>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및 회피로 인하여 세부담 차원에서 국내투자에 비해 저세율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유리하게 되어 투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제중립성(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sup>40)</sup> 안중석·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2., p.130

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였음

-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음

## 6. 요약 및 결론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26일 세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등을 통해 해외유보된 자본을 국내로 유입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였음**

- 특히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표명, 이를 통해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치할 수도 있으므로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 함

- 국제적으로 볼 때 2016년 기준 약 91개 국가들이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원천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함**

-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유지 또는 인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부합됨

- 우리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임.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및 국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다가 국제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고, 제도 전환 전보다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이 56.4% 증가하였음.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후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뿐만 아니라,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 부과가 가능한 원천지주의 과세가 타당함**

**[참고문헌]**

구자은·오윤·임동원, “통상규범과 국내세법의 조율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3.

김학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 2016.8.

안종석·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2.

오윤·임동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경엽,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집, 2016.11.1.

Committee on Ways and Means Press Release, “Camp Releases Tax Reform 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Make the Tax Code Simpler, Fairer and Flatter”, 2014.2.26.

Curtis Dubay, “A Territorial Tax System Would Create Jobs and Raise Wages for U.S. Workers”, The Heritage Foundation, 2013.9.12.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Nick Wells, “Companies are holding a \$2.6 trillion pile of cash overseas that's still growing”, CNBC, 2017.4.28.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2011.6.

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2016.2.19.), “17年度予算教書-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ニッセイ基礎研究所.

Weeklyエコノミスト・レター(2017.2.20.), “法人税制改革論議が本格化-注目される国境調整税(BAT)の行方”, ニッセイ基礎研究所.

Yoree Koh, “Trump Tax Plan Doesn't Solve Tech's Multibillion-Dollar Overseas-Cash Problem”, The Wall Street Journal, 2017.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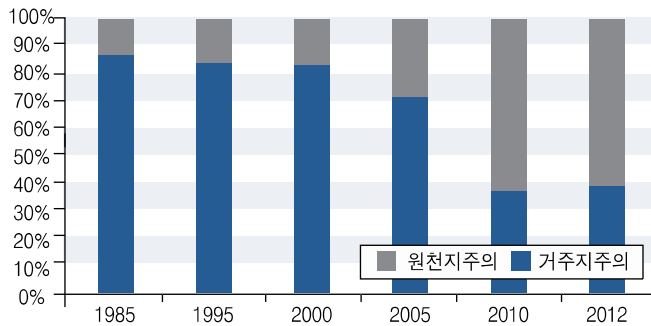
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0.

[부록]

〈부록 그림 1〉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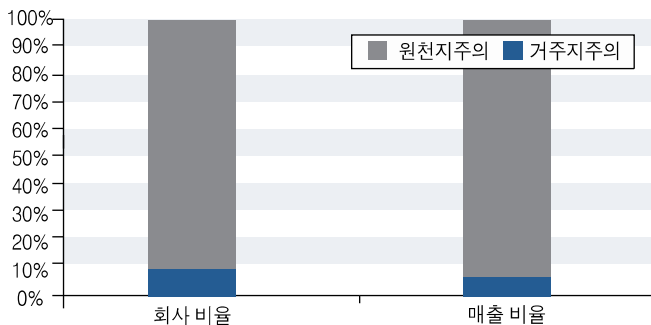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포브스 500기업 중 OECD 기업의 과세방식별 매출 변동 추이



자료: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그림 재구성

〈부록 그림 3〉 미국 외의 국가에 본점을 둔 OECD 기업(포브스 500)의 수와 매출 (2012년 기준)



자료: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그림 재구성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13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